

2023 세무회계(정재연·이승원·이승철 저, 나무경영아카데미) 추록 및 정오표 - 4. 20. 현재

2023년 3월 30일에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과 세법 시행령 확정 과정에서 현재 교재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변경된 사항 및 교재출간 후 발견된 수정사항 중 주요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.

표현방식의 단순한 변화 등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수험목적에 고려하여 생략하였습니다.

I.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

1. 개정사항 개요

(1) 법인세법

통합투자세액공제율 일부 상향 조정

(2) 소득세법

① 고위험·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

현 행	개 정
<신 설>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위험·고수익채권 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○ (적용요건)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○ (특례내용)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·배당소득은 14% 세율로 분리과세 (가입 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) ○ (적용한도)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○ (적용기한) '24.12.31. 까지 가입분

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확대

2023년에 한정하여 대중교통사용분공제율을 40%에서 80%로 확대함

2. 교재 수정사항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565	하15	※ 통합투자세액공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 통합투자세액공제율 : A+B A. 기본공제 :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 × 1% (중견기업 5% 개정, 중소기업 10%)*1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3%, 중견기업 7%, 중소기업 12% 적용 개정 B. 추가공제 : (당기 투자액 -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) × 3%*2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적용 개정	
		*1. 신성장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%(중견기업 6% 개정, 중소기업 12%, 단, 2023년에 한정하여 일반기업 6%, 중견기업 10%, 중소기업 18% 적용 개정)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,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5%(중소기업 25%) 개정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. 2. 추가공제 금액이 기본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의 2배를 한도로 하며,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경우는 추가공제율을 4%(단, 2023년에 한정하여 10% 개정)로 한다.	
1-592	하1 ~ 하5	(3) 통합투자세액공제 : ①+②=W7,400,000 ① 기본공제 : W68,000,000×10%(중소기업)=W6,800,000 ~ ② 추가공제 : (W68,000,000 - W48,000,000)×3%=W600,000	(3) 통합투자세액공제 : ①+②=W10,160,000 ① 기본공제 : W68,000,000×12%(중소기업)=W8,160,000 ~ ② 추가공제 : (W68,000,000 - W48,000,000)×10%=W2,000,000
1-593	상3 ~ 하5	Max[W3,000,000, W3,250,500, W7,400,000]=W7,400,000 =W7,400,000+W10,000,000+W2,000,000=W19,400,000	Max[W3,000,000, W3,250,500, W10,160,000]=W10,160,000 =W10,160,000+W10,000,000+W2,000,000=W22,160,000
1-600	상13	(4) 통합투자세액공제 : W490,000,000×10%=W49,000,000	(4) 통합투자세액공제 : W490,000,000×10%=W49,000,000* * 2023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12%이지만 문제가 공제율을 10%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대로 풀이하기로 한다.
1-658	하9	* W9,000,000×10%=W900,000 투자자 2개 이상 ~ 적용받을 수 있다.	* W9,000,000×10%=W900,000 투자자 2개 이상 ~ 적용받을 수 있다. 2023년에 한하여 중소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12%이지만 문제가 공제율을 10%로 제시하였으므로 이대로 풀이하기로 한다.

2-19	상21	(추가)	(11)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(3,000만원까지의 매입액)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개정	14%																						
2-20	하4	(추가)	①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개정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																							
2-240	상14	아래 별도 기술																								
2-257	상13	(3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1,133,750$ ① 공제대상액 : $a+b = \text{₩}1,133,750$ a. $\text{₩}2,000,000(\text{대중교통사용분}) \times 40\% = \text{₩}800,000$	(3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1,933,750$ ① 공제대상액 : $a+b = \text{₩}1,933,750$ a. $\text{₩}2,000,000(\text{대중교통사용분}) \times 80\% = \text{₩}1,60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	상20	(4) 종합소득공제 : $(1) + (2) + (3) = \text{₩}9,133,750$	(4) 종합소득공제 : $(1) + (2) + (3) = \text{₩}9,933,750$																							
2-258	상15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5,30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a+b+c = \text{₩}5,405,000$ a. $(\text{₩}3,000,000 + \text{₩}2,000,000) \times 40\% = \text{₩}2,000,000$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6,00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a+b+c = \text{₩}6,205,000$ a. $\text{₩}3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80\% = \text{₩}2,80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	상19	② 한도 : $a+b = \text{₩}5,300,000$ a. 일반한도 : $\text{₩}3,000,000$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text{ㄱ}, \text{ㄴ}] = \text{₩}2,300,000$ ㄱ. $\text{₩}3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1,000,000 \times 30\% = \text{₩}2,300,000$ ㄴ. $\text{₩}3,000,000$ 5. 종합소득공제 $\text{₩}6,500,000 + \text{₩}1,000,000 + \text{₩}800,000 + \text{₩}5,300,000 = \text{₩}13,600,000$	② 한도 : $a+b = \text{₩}6,000,000$ a. 일반한도 : $\text{₩}3,000,000$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text{ㄱ}, \text{ㄴ}] = \text{₩}3,000,000$ ㄱ. $\text{₩}3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80\% + \text{₩}1,000,000 \times 30\% = \text{₩}3,100,000$ ㄴ. $\text{₩}3,000,000$ 5. 종합소득공제 $\text{₩}6,500,000 + \text{₩}1,000,000 + \text{₩}800,000 + \text{₩}6,000,000 = \text{₩}14,30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2-263	하17	a. 공제대상액 : $\text{㉠} + \text{㉡} = \text{₩}6,400,000$ ㉠ $(\text{₩}11,000,000 + \text{₩}2,000,000) \times 40\% = \text{₩}5,200,000$	a. 공제대상액 : $\text{㉠} + \text{㉡} = \text{₩}7,200,000$ ㉠ $\text{₩}11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80\% = \text{₩}6,00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	하11	㉡ $\text{₩}11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3,000,000 \times 30\% = \text{₩}6,100,000$	㉡ $\text{₩}11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2,000,000 \times 80\% + \text{₩}3,000,000 \times 30\% = \text{₩}6,90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2-321	상7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3"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 <td>4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5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 공제를 적용대상		30% 공제를 적용대상		15% 공제를 적용대상	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4"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 <td>8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4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3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>15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80% 공제를 적용대상		40% 공제를 적용대상		30% 공제를 적용대상		15% 공제를 적용대상	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	30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	15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80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	40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	30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	15% 공제를 적용대상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																								
2-325	하4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3"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 <td>4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₩1,700,000</td> </tr> <tr> <td>3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5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19,900,00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</td> <td>640,000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 공제를 적용대상	₩1,700,000	30% 공제를 적용대상	-	15% 공제를 적용대상	19,90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640,000	<table border="1"> <tr> <td rowspan="4">신용카드 등 사용금액</td> <td>8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₩200,000</td> </tr> <tr> <td>4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1,500,000</td> </tr> <tr> <td>30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15% 공제를 적용대상</td> <td>19,900,000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</td> <td>720,000</td> </tr> </table>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80% 공제를 적용대상	₩200,000	40% 공제를 적용대상	1,500,000	30% 공제를 적용대상	-	15% 공제를 적용대상	19,90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720,000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40% 공제를 적용대상	₩1,7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	30% 공제를 적용대상	-																								
	15% 공제를 적용대상	19,9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64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금액	80% 공제를 적용대상	₩2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	40% 공제를 적용대상	1,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	30% 공제를 적용대상	-																								
	15% 공제를 적용대상	19,90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		7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
2-326	상3	② 대중교통이용분(40% 공제를 적용대상) : ₩200,000	② 대중교통이용분(80% 공제를 적용대상) : ₩200,000																							
	상7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64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(\text{₩}1,500,000 + \text{₩}200,000 + \text{₩}19,900,000 - \text{₩}8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40\% = \text{₩}640,000$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{①}, \text{②}] = \text{₩}72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a+b = \text{₩}720,000$ a. $\text{₩}200,000 \times 80\% = \text{₩}160,000$ b. $(\text{₩}1,500,000 + \text{₩}19,900,000 - \text{₩}8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40\% = \text{₩}560,000$																							
	하9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2,77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2,890,000																							
2-327	하16	②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a, b] = \text{₩}2,770,000$ a. 공제대상액 : $(\text{₩}4,000,000 + \text{₩}300,000) \times 40\% + (\text{₩}27,000,000 - \text{₩}8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\text{₩}2,770,000$ b. 한도 : $\text{ㄱ} + \text{ㄴ} = \text{₩}4,220,000$ ㄱ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ㄴ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text{㉠}, \text{㉡}] : \text{₩}1,720,000$ ㉠ $\text{₩}4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300,000 \times 40\% = \text{₩}1,720,000$ ㉡ ₩2,000,000	②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a, b] = \text{₩}2,890,000$ a. 공제대상액 : $\text{₩}4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300,000 \times 80\% + (\text{₩}27,000,000 - \text{₩}8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\text{₩}2,890,000$ b. 한도 : $\text{ㄱ} + \text{ㄴ} = \text{₩}4,340,000$ ㄱ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ㄴ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text{㉠}, \text{㉡}] : \text{₩}1,840,000$ ㉠ $\text{₩}4,000,000 \times 40\% + \text{₩}300,000 \times 80\% = \text{₩}1,840,000$ ㉡ ₩2,000,000																							
2-329	하12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4,300,000	신용카드 등 사용 소득공제액 4,500,000																							

2-330	상5	(4)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a, b]=₩4,30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(₩3,000,000 + ₩1,500,000) \times 40\% + (₩40,000,000 - ₩82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₩4,725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4,300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800,000$ ㄱ. $(₩3,000,000 + ₩1,500,000) \times 40\% = ₩1,800,000$ ㄴ. ₩2,000,000	(4) 신용카드 등 사용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a, b]=₩4,50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₩3,000,000 \times 40\% + ₩1,500,000 \times 80\% + (₩40,000,000 - ₩82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₩5,325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4,500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2,000,000$ ㄱ. $₩3,000,000 \times 40\% + ₩1,500,000 \times 80\% = ₩2,400,000$ ㄴ. ₩2,000,000
2-346	하4	(3) 신용카드소득공제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3,560,000$ ① 공제대상액(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은 경우) : $(₩2,500,000 + ₩1,000,000) \times 40\% + (₩12,000,000 + ₩5,200,000 - ₩4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30\% = ₩3,560,000$	(3) 신용카드소득공제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3,960,000$ ① 공제대상액(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은 경우) : $₩2,500,000 \times 40\% + ₩1,000,000 \times 80\% + (₩12,000,000 + ₩5,200,000 - ₩40,000,000 \times 25\%) \times 30\% = ₩3,960,000$
2-347	상7	② 한도 : $a + b = ₩4,400,000$ a. 일반한도 : ₩3,0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400,000$ ㄱ. $₩2,500,000 \times 40\% + ₩1,000,000 \times 40\% = ₩1,400,000$ ㄴ. ₩3,000,000 (4) 종합소득공제액 : $(1) + (2) + (3) = ₩14,970,000$	② 한도 : $a + b = ₩4,800,000$ a. 일반한도 : ₩3,0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800,000$ ㄱ. $₩2,500,000 \times 40\% + ₩1,000,000 \times 80\% = ₩1,800,000$ ㄴ. ₩3,000,000 (4) 종합소득공제액 : $(1) + (2) + (3) = ₩15,370,000$
2-354	상2	a. 공제대상액 : $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 = ₩6,090,000$ ① $(₩6,500,000 + ₩1,600,000) \times 40\% = ₩3,240,000$	a. 공제대상액 : $\textcircled{1} + \textcircled{2} + \textcircled{3} = ₩6,730,000$ ① $₩6,500,000 \times 40\% + ₩1,600,000 \times 80\% = ₩3,880,000$
	상15	② $₩6,500,000 \times 40\% + ₩1,600,000 \times 40\% = ₩3,240,000$	② $₩6,500,000 \times 40\% + ₩1,600,000 \times 80\% = ₩3,880,000$
2-415	하15	(1) 기본한도내 공제액 (2) 추가공제액 (3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2,500,000 1,920,000 4,420,000	(1) 기본한도내 공제액 (2) 추가공제액 (3)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2,500,000 2,000,000 4,450,000
	하8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4,42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(₩4,200,000 + ₩600,000) \times 40\% + ₩5,900,000 \times 30\% + (₩28,300,000 - ₩82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₩4,860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4,420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920,000$ ㄱ. $₩4,200,000 \times 40\% + ₩600,000 \times 40\% = ₩1,920,000$ ㄴ. ₩2,000,000	(2)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4,500,000$ ① 공제대상액 : $₩4,200,000 \times 40\% + ₩600,000 \times 80\% + ₩5,900,000 \times 30\% + (₩28,300,000 - ₩82,000,000 \times 25\%) \times 15\% = ₩5,100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4,500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2,000,000$ ㄱ. $₩4,200,000 \times 40\% + ₩600,000 \times 80\% = ₩2,160,000$ ㄴ. ₩2,000,000
2-423	하10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 1,644,000	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 1,728,000
	하8	종합소득 과세표준 ₩60,526,000 산출세액 ₩8,776,240	종합소득 과세표준 ₩60,442,000 산출세액 ₩8,746,080
	하1	결정세액 ⑩ ₩4,771,240	결정세액 ⑩ ₩4,211,080
2-424	하14	•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1,644,000$ ① 공제대상액 : $(₩2,700,000 + ₩210,000) \times 40\% + (₩2,500,000 + ₩21,000,000 - ₩87,600,000 \times 25\%) \times 30\% = ₩1,644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3,664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164,000$ ㄱ. $(₩2,700,000 + ₩210,000) \times 40\% = ₩1,164,000$ ㄴ. ₩2,000,000	• 신용카드소득공제액 : $\text{Min}[\textcircled{1}, \textcircled{2}] = ₩1,728,000$ ① 공제대상액 : $₩2,700,000 \times 40\% + ₩210,000 \times 80\% + (₩2,500,000 + ₩21,000,000 - ₩87,600,000 \times 25\%) \times 30\% = ₩1,728,000$ ② 한도 : $a + b = ₩3,748,000$ a. 일반한도 : ₩2,500,000 b. 추가한도 : $\text{Min}[\neg, _] = ₩1,248,000$ ㄱ. $₩2,700,000 \times 40\% + ₩210,000 \times 80\% = ₩1,248,000$ ㄴ. ₩2,000,000
2-425	상15	① 종합소득과세표준 : ₩73,470,000 - ₩12,944,000*1 = ₩60,526,000 ② 산출세액 : ₩6,240,000 + (₩60,526,000 - ₩50,000,000) × 24% = ₩8,766,240 ③ 결정세액 : ₩8,766,240 - ₩4,535,000 = ₩4,231,240 * 1. 종합소득공제 : ₩6,000,000(기본공제) + ₩3,000,000(추가공제) + ₩2,000,000(연금보험료공제) + ₩300,000(특별소득공제) + ₩1,644,000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= ₩12,944,000	① 종합소득과세표준 : ₩73,470,000 - ₩13,028,000*1 = ₩60,442,000 ② 산출세액 : ₩6,240,000 + (₩60,442,000 - ₩50,000,000) × 24% = ₩8,746,080 ③ 결정세액 : ₩8,746,080 - ₩4,535,000 = ₩4,211,080 * 1. 종합소득공제 : ₩6,000,000(기본공제) + ₩3,000,000(추가공제) + ₩2,000,000(연금보험료공제) + ₩300,000(특별소득공제) + ₩1,728,000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= ₩13,028,000

※ 2-240쪽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계산산식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.

소득공제 = Min[1, 2]

1. 공제대상액 : ① 또는 ② 또는 ③ 또는 ④

①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: a+b+c

a. 전통시장사용분^{*1}×40%+대중교통이용분^{*2}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**개정**

b. (도서등사용분^{*3}+직불카드등사용분^{*4,*6})×30%

c. (신용카드사용분^{*5}-총급여×25%)×15%

② 신용카드사용분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: a+b

a. 전통시장사용분×40%+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**개정**

b. (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30%

③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 및 도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고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 : a+b

a. 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**개정**

b. (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40%

④ 신용카드사용분, 직불카드등사용분, 도서등사용분 및 전통시장사용분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%보다 적은 경우
 : (대중교통이용분+전통시장사용분+도서등사용분+직불카드등사용분+신용카드사용분-총급여×25%)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**개정**

2. 한도 : (1)+(2)**개정**

(1) 일반한도 : 25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

(2) 추가한도 : Min[①, ②]

① 전통시장사용분×40%+대중교통이용분×40%(2023년에 한하여 80%)**개정**+도서등사용분×30%

② 200만원(총급여액이 7,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원)

* 일반한도 초과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한도는 적용하지 않는다.

II. 시행령 확정에 따른 문구 변경사항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88	하6	① 세금과 공과금(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직접외국납부세액 포함)	① 세금과 공과금(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)
3-162	상21	i.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(공급하는 자가 해당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) 개정	i.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판매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
4-9	하12	* 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 및 태아(연로자공제 및 장애인공제는 제외) 개정 를 말한다. 이 경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.	* 1. 동거가족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, 형제자매를 말한다.

III. 교재 수정사항

Page	행	수 정 전	수 정 후
1-167	상15	손익계산서상 절대비(비용) ₩15,000,000,000	손익계산서상 매출액 ₩15,000,000,000
	상8	<추 가>	<손금불산입> 국외원천징수세액 ₩300,000 (기타사외유출)
1-234	상12	① 원천징수세액 : ₩30,000,000×46.2%⇒₩13,860,000(기타사외유출) ② 잔액 : ₩30,000,000-₩13,860,000⇒₩16,140,000(상여)	① 원천징수세액 : ₩30,000,000×49.5%⇒₩14,850,000(기타사외유출) ② 잔액 : ₩30,000,000-₩14,850,000⇒₩15,150,000(상여)
1-349	상18	2. 300만원 이상이며 전기 장부가액의 ~	2. 600만원 이상이며 전기 장부가액의 ~
1-475	하7	4. ~ 외국자회사(배당확정일 현재 1년간 ~	4. ~ 외국자회사(배당기준일 현재 1년간 ~
1-520	하9	② ~ ₩3,150,000-₩900,000×12월 ⇒₩2,070,000	② ~ ₩3,150,000-₩90,000×12월 ⇒₩2,070,000
1-578	하13	~ 국외원천소득은 A국과 B국에서 발생한 것이다.	~ 국외원천소득은 A국과 B국 및 C국에서 발생한 것이다.
1-581	하3	~ Min[(1), (2)]=₩3,646,456	~ Min[(1), (2)]=₩2,234,042

1-592	상7	~ 특별세액감면 : ₩3,546,000	~ 특별세액감면 : ₩3,250,500
	상6	세액감면 5,050,000 100% 5,120,000 합 계 ₩12,620,000	세액감면 4,470,000 100% 4,470,000 합 계 ₩11,970,000
1-618	하1	Max[최저한세 ₩21,500,000, 감면후세액 ₩8,880,000] - ₩1,084,200=₩20,415,800	산출세액 ₩20,850,000-₩1,084,200=₩19,765,800 * <경우 2>의 상황은 최저한세 대상 항목을 모두 배제하여도 감면후세액이 최저한세에 미치지 못한다. 비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최저세율 9%보다 최저한세율 10%가 더 높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다.
1-678	하11	B법인 : ~ =₩30,402,400	B법인 : ~ =₩30,402,000
1-685	하15	차가감 소득금액 ₩344,660,000 ₩46,640,000	차가감 소득금액 ₩329,480,000 ₩46,640,000
	하13	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44,660,000 ₩63,576,000	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29,480,000 ₩63,576,000
1-687	하14	1.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44,660,000 ₩74,646,000	1.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29,480,000 ₩63,576,000
1-688	상7	1.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44,660,000 ₩63,576,000	1. 각사업연도소득금액 ₩329,480,000 ₩63,576,000
	상9	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(+)44,340,000 (+)19,680,000	①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(+)59,520,000 (+)19,680,000
1-716	상15	* 건물부인액이며, 취득 이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~	* 건물의 취득일은 2017. 10. 1., 취득가액은 ₩60,000,000, 신고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는 20년, 유보는 상각부인액이며, 취득 이후 감가상각시부인계산은 ~
1-717	하3	(1) 합병매수차손 : ①-②=₩38,000,000	(1) 합병매수차손 : Min[(①-②), ₩30,000,000*]=₩30,000,000 * 합병대가 중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부분만 합병차손으로 손금에 산입한다.
1-718	상1	(2) 합병매수차손 상각액 : ₩38,000,000×4/60=₩2,533,333	(2) 합병매수차손 상각액 : ₩30,000,000×4/60=₩2,000,000
	상2	(3) 기말잔액 : ₩38,000,000 - ₩2,533,333=₩35,466,667	(3) 기말잔액 : ₩30,000,000 - ₩2,000,000=₩28,000,000
2-52	상10	5. 2013년에 가입하여 ~	5. 2014년에 가입하여 ~
2-53	상15	4. 2013. 2. 15. 이전에 계약 체결한 일반 저축성보험은 ~	4.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은 ~
2-78	하3	③ 한도초과액 : (~ +₩3,000,000) - ~ = ₩3,000,000	③ 한도초과액 : (~ +₩30,000,000) - ~ = ₩30,000,000
	하1	₩22,000,000 - ~ + ₩3,000,000(일반 초과)=₩24,400,000	₩22,000,000 - ~ + ₩30,000,000(일반 초과)=₩51,400,000
2-86	하11	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5,636,000	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 5,660,000
2-159	상10	2. 2023년 ~ ₩4,000,000 이내이므로 ~	2. 2023년 ~ ₩6,000,000 이내이므로 ~
2-162	하6	₩12,000,000과 ₩46,000,000 사이에 존재하므로 ~	₩14,000,000과 ₩50,000,000 사이에 존재하므로 ~
2-168	상8	(2) 원천징수세액 9,149,800	(2) 원천징수세액 5,150,000
2-347	하2	(4) 세액공제액 : ~ = ₩3,726,000	(4) 세액공제액 : ~ = ₩3,732,000
2-355	하8	b. 한도 : ₩2,971,500	b. 한도 : ₩2,587,500
2-387	하15	상여금 18,000,000	상여금 25,000,000
	하12	합계 ₩110,000,000	합계 ₩117,000,000
	하9	~+(₩110,000,000 - ~ = ₩14,950,000	~+(₩117,000,000 - ~ = ₩15,090,000
	하7	₩110,000,000 - ₩14,950,000=₩95,050,000	₩117,000,000 - ₩15,090,000=₩101,910,000
2-427	상8	(3) 식 대 ~ 1,800,000	(3) 식 대 ~ 3,000,000
2-436	상11	배당금 익금불산입 - (2,100,000)* ²	배당금 익금불산입 - (5,600,000)* ²
	상12	합계 ~ ₩24,900,000	합계 ~ ₩21,400,000
	상15	2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: ₩7,000,000×30%=₩2,100,000	2.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: ₩7,000,000×80%=₩5,600,000
	하9	금융소득금액 ~ ₩24,900,000	금융소득금액 ~ ₩21,400,000
	하5	과세표준 ~ ₩76,900,000	과세표준 ~ ₩73,400,000
2-437	상2	₩76,900,000×9%=₩6,921,000	₩73,400,000×9%=₩6,606,000
	상10	(2) 법인기업인 경우 : ₩6,921,000	(2) 법인기업인 경우 : ₩6,606,000
	하5	결정세액 ~ ₩6,921,000	결정세액 ~ ₩6,606,000
	하1	합계 ~ (₩879,000)	합계 ~ (₩1,194,000)
2-523	하3	~ - ₩1,345,000* = ₩4,280,000	~ - ₩1,365,000* = ₩4,260,000
3-239	상10	₩104,000,000 / ₩421,000,000 = ~	₩104,000,000 / ₩421,200,000 = ~
3-304	하2	6. 甲은 ~ 발급 및 전송하였다.	6. 甲은 ~ 발급 및 전송하였으며, 제1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₩200,000이다.
3-305	하1	② ₩1,000,000	② ₩1,000,000 - ₩200,000=₩800,000
3-331	상8	* ~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 및 전송하였다.	* ~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였다.
3-333	하7	건 물 2,880,000	건 물 3,024,000
	하3	(3)건물 : ~ (1-10%)=₩2,880,000	(3)건물 : ~ (1-5.5%)=₩3,024,000
	하1	* 2021년 7월 1일 전에 재화를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 부가가치율(재고자산 및 건설중인자산은 변경 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율)을 적용한다.	< 삭 제 >